

의안번호	2217860
의 퇴 인	박희승 의원
회 답 일	2026. 4. 21.
추계번호	26C180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 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2조의3 (공영장례 지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장례절차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1. 무연고사망자등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시장등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2조의3 (공영장례 지원)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의 시신 중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직접 매장 또는 화장·봉인하고, 무연고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절차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사업무안내」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는 시신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5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시신 처리 위임서’를 받아 처리하며, 연고자가 장례의사는 있으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공영장례, 마을 장례 프로그램 또는 민간자원 등과 연계하여 장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증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례 처리 건수 및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재정적 지원의 규모를 알 수 없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직무대리)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제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nabo.go.kr